#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3138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 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 상 취득세 과세표준의 조문 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지방세법」 상 취득세 과세표준 조문 체계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조문의 시행일을 상위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규정함(안 제5조).

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세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22. 1. 27. ~ 2. 16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(3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별도첨부

#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10조제4항"을 "법 제10조의6제4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과점주주의 신고) 법 <u>제10</u>	제5조(과점주주의 신고) 법 <u>제10</u>
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	조의6제4항
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	
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	
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	
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	
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비용 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3. 미첨부 사유

상위 법에서 조문 체계를 정비('제10조제4항' ⇒ '제10조의6제4항')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

#### 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박성호 (02-2133-3357)